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43

제출년월일 : 2009. 6. 1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로 확대함(안 제4조).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관련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학교급식법 제2조 및 제4조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18. ~ 5. 28.(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직영급식" 이란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위탁급식" 이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5. "학교급식재료"란 곡물·야채·과일·육류·어패류 등 신선식품 및 신선 식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학교급식소위원회"라 함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사·학생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학교급식센터"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 3년 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직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경우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의 자녀 중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학교급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시설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 시행계획
5.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20명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실시 시설의 급식 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업무담당국·과장 및 안산교육청 관련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단체 추천인
3. 교사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안산시 영양사협회 추천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학교급식재료 조달방법 및 공급체계,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세부사항,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3항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생명산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생명산업과 김 응 로
	담당·팀장 직위·성명	농정담당 김 재 봉
	담 당 자 성명·전화	두 현 지 (행정 231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3. (생략) 4.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재료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적용 축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5.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곡물·야채·과일·육류·어패류 등 신선식품 및 곡물이나 신선식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생략) 7 . 〈신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5. "학교급식재료"란 곡물·야채·과일·육류·어패류 등 신선식품 및 신선식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학교급식센터" 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 3년 마다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책을 안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 (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 3년 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산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3호의 보육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하며, 지원의 규모및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학교급식 시설, 경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직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2.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 등에 따른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기타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의 자녀중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급식 시설, 설비..... .....지원할 수 있다. 1. ..... 시설에 대하여 급식 시설·..... .... 전부 ..... 2. .....시설...급식 시설..... .... 전부 ..... 3. 〈삭제〉 ③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의2.....그 밖에..... ....
제6조(지원신청) ①학교급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교육법상의어린이집 및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타 지원신청 기간·절차·서식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민간위원수를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1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과장 각 1인 2. 안산교육청 관련 국장, 과장 각 1인 3. 학부모 단체 추천 2인 4. 교사단체 추천 2인 5. 시민사회단체 추천 3인 6. 농민단체 추천 2인 7. 안산시 영양사협회 추천 1인 8.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인 9. 시의원 1인 10. 기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2.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은 계획생산 및 공급관리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 5.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에 대한 지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20명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실시 시설의 급식 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업무담당국·과장 및 안산교육청 관련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단체 추천인 3. 교사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안산시영양사협회 추천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및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 보육시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지도·감독) ① ~ ② (생략) ③ 기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신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843

제안년월일 : 2009. 7. 3.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학교급식' 에 대한 정의를 현행 실태에 맞게 유치원을 포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원수를 2인 이내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학교급식" 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의 폐지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으로 변경함(안 제2조)

○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위원에 대하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각호의 위촉위원은 2인 이내로 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1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2조 4호 가, 나, 다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 4호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제2조 4호 마, 바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20명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실시 시설의 급식 시설 · 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호의 위촉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학교급식업무담당국 · 과장 및 안산교육청 관련 국 ·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단체 추천인
3. 교사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안산시영양사협회 추천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학교급식” 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3.(생략) 4. (생략)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가. .....따른 ..... 나. ..... 따른 ..... 다. ..... 따른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 따른 ..... 바.....따른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업무담당국·과장 및 안산교육청 관련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단체 추천인 3. 교사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안산시영양사협회 추천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④ (생략)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원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호의 위촉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학교급식업무담당국·과장 및 안산교육청 관련 국·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8. (원안 제2항 1. ~ 8.과 같음) ④(원안 ③항과 같음) ⑤(원안 ④항과 같음)